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2. 27. 김준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2.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6. 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준혁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상열)

개정안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이 확보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의 수급 연령 기준(19세 미만)과 이를 상회하는 연령 기준(25세가 되었을 때)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학업,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5세 이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을 지원하게 되어,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손자녀인 유족의 수급 요건은 연령 이외

의 기준(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 포함 여부)도 변동되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대상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김준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